

별첨

전형단계별 우대(가점부여 등) 기준

■ 서류전형 우대사항

구 분	내 용				
서류전형	◆ (공통사항) ① ~ ⑦가점은 최대 15점까지 부여 ▶ 단, ③ 비수도권지역인재, ④ 저소득층, ⑤ 북한이탈주민, ⑥ 다문화가족, ⑦ 자립준비청년 가점은 중복 시에도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				
	① [국가유공자] <table> <tr> <th>10% 가점 대상자</th> <th>5% 가점 대상자</th> </tr> <tr> <td>만점의 10%</td> <td>만점의 5%</td> </tr> </table> ※ 「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※ 가점 부여 범위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 제①항, 제②항, 제③항 및 지침(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) 적용	10% 가점 대상자	5% 가점 대상자	만점의 10%	만점의 5%
	10% 가점 대상자	5% 가점 대상자			
	만점의 10%	만점의 5%			
	② [장애인] 가점 5점 ▶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				
	③ [비수도권 지역 인재] 가점 3점 ▶ 대학까지의 최종학력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사람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사람 / [별첨 「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」 참조				
	④ [저소득층] 가점 3점 ▶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관련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				
	⑤ [북한이탈주민] 가점 3점 ▶ 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※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가능한 사람				
	⑥ [다문화가족] 가점 3점 ▶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※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람				
	⑦ [자립준비청년] 가점 3점 ▶ 「아동복지법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에 따른 '청년에 해당하는 자 ※ 자립준비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람				

■ 면접전형 우대사항

구 분	내 용				
면접전형	◆ (공통사항) ① ~ ②의 가점은 최대 10점까지 부여				
	① [국가유공자]				
	<table> <tr> <td>10% 가점 대상자</td> <td>5% 가점 대상자</td> </tr> <tr> <td>만점의 10%</td> <td>만점의 5%</td> </tr> </table>	10% 가점 대상자	5% 가점 대상자	만점의 10%	만점의 5%
	10% 가점 대상자	5% 가점 대상자			
	만점의 10%	만점의 5%			
※ 「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」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※ 가점 부여 범위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 제①항, 제②항, 제③항 및 지침(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) 적용					
② [장애인] 가점 5점					
	▶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				